



崔 聖 圭 (정보통신진흥협회 기획조정실장)

공정경쟁관계는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

100여년간 전통적으로 국가의 독점하에 있어 왔던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은 80년대초 한국통신이 설립되면서 비로소 정책기능과 사업기능이 분리됐다.

그후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 세계 10위권 수준의 통신 선진국이 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반면 이러한 고도성장은 미국 등 주요 통신 선진국들의 국내시장 개방압력을 초래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은 국내시장의 전면개방과 아울러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며, 그 요구조건들은 지금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미협상과정에서 대부분 받아 들여진 상태이다.

시장이 대외에 개방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기는 한국통신으로 대표되는 기간통신사업자나 민간 정보통신역무업자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외국의 우수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민간기업들은 기술이나 자본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어찌되었던 개방은 이루어졌고, 종던 싫던 경쟁이 시작된 만큼 차제에 국내 전기통신, 특히 정보통신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사업자들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은 80년대의 양적팽창 과정을 거쳐 질적고도화를 추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과 한국통신의 공기업적인 역할수행이 있었고, 이러한 정책기능과 사업기능의 조화가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한차원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민간역무업자 간의 적정한 사업영역 설정과 역할의 분담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질적 고도화를 위해 민간 쪽에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통신사업구조 조정과 경쟁도입 정책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에 따른 이견표출과 함께 모두가 사업영역 확대와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사업자들은 경쟁체제의 도입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선진 각국의 성공사례, ▼독점체제가 기본통신의 수요는 충족시켰으나 유저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 ▼통신위성과 패킷교환서비스 등 원거리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민간의 참여 여지가 확대된 점, ▼이용의 안정성·공평성·신뢰성 확보를 통한 건전한 통신시장 육성,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국제경쟁력 확보, ▼UR협상의 진전과 외국 통신서비스업체의 국내진출 등 그 이유를 다양하게 제시하며,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경쟁체제의 도입과 공정경쟁 그 자체는 이제껏 독점영역으로 되어

있던 통신서비스 분야에 민간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고, 새로운 고도 정보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사업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뜻한다.

경쟁의 도입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품질저하, 중복투자의 발생,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갖는 공익성과 기업성의 부조화, 기술적 통일성의 확보 문제 등 역기능을 초래할 소지가 없지 않지만 목하 시대상황은 민간사업자들의 역무제공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공정경쟁체제하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기통신관련 법체계가 국제VAN의 개방과 더불어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 참여와 민간 VAN사업자의 사업영역 확대 등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가입자회선을 기간통신사업자만이 보유하고 있고 민간사업자는 이를 임차해 써야 하므로 공정경쟁체제를 마련한다는 것 그 자체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제도로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보다 바람직한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민간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통신사업자와 민간 역무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 제공범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기간통신사업자 망과 민간 VAN사업자 망의 자유로운 접속 보장, 아울러 기간전산망에의 상호접속, 음성 및 무선통신의 데이터와 혼합사용 허용 등이다.

둘째, 민간 역무업자에 제공되는 회선품질기준의 공시 등 고속·고품질의 회선을 제공하는 것.

셋째, 공정접속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정보 공개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망비밀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서비스원가구조의 공개 및 서비스요금의 Bundling을 금지함으로써 서비스 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기본통신부문과 부가통신부문의 조직 및 회계를 분리해 내부보조

에 의한 불공정경쟁을 방지하는 것.

다섯째, VAN사업자에게도 망 식별번호를 부여해 사업의 국제화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는 점.

여섯째, 통일된 기술표준의 확보로 게이트웨이(관문국) 비용 등 민간사업자의 경비절감을 도와주는 것 등이다.

민간사업자들의 이같이 다양한 요구를 점진적으로나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민간 VAN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보장 장치로서 '통신망서비스공개규정(ONSP)'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 같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민간 VAN사업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할 정부내 상설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설치·운영될 통신위원회가 우리 협회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업계의견을 대변할 수 있게 하는 참고인진술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공정경쟁체제의 확보는 정보통신사업 기반확대와 국가역량의 극대화를 꾀하는 지름길로서 이를 바탕으로 한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은 궁극적으로 국제시장에서의 협력과 경쟁력 제고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일본기업들이 확고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세계 도처에서 고도의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점이나 일찍이 공정경쟁체제를 확립한 미국의 통신사업체들이 다른 나라의 통신시장에 대거 진출할 수 있었던 예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공정경쟁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발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관계로 볼 수 있다. 경쟁상대방에 대한 공정경쟁의 보장과 지원은 오히려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생산성향상을 가져오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VAN의 개방과 더불어 국내시장이 문지기 없는 골때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물론 기간통신사업자와 민간 정보통신사업자 모두가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중지를 모을 때이다.